

특허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정 2019. 9. 23. 훈령 제9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특허청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2.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공무원”은 위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 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체계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 특허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특허청에 둔다.

② 「특허청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특허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소송 등의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내용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특허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② 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 의한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금액이 의결되면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속부서에 이를 지급의뢰한다.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특허청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 단,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함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특허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제9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 정한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2.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세금 계산서 사본
5.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 등의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 각 호의 서류 및 제11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소송 등의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 관리, 지원 취소 등

제14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

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또한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
2. 변호인·소송대리인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4.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 사본
5. 기타 소송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③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송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 등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6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952호, 2019. 9. 23.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특허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자		신청일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개 요	지원결정일	지원내용	수사 및 소송결과	지원 취소 · 반환 등	비고
	소속	성명								